

## 제25회 법무사 2차시험 형법문제에 대하여

### I. 들어가며

드디어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시험이 끝났군요. 수험생분들 모두 시험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 II. 출제문제 분석

[문 1]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에 관한 대판 2006도3126를 기초로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1문은 이렇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융기관인 B저축은행에 대한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10점), 제2문은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丙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아는지 를 묻는 문제이다(10점).

[문 2]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책에 관한 대판 2008도7311를 기초로 구성한 문제이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이보다 형이 경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을 기술 하면 된다(15점).

[문 3]은 대판 2015도2229의 판례사안을 기초로 모욕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기술하면 된다(15점).

### III. 문제에 대한 단상

[문 1]과 [문 3]은 각론상의 쟁점을 묻는 문제이지만, [문 2]는 총론상의 쟁점을 묻는 문제이다. 1차시험 준비과정에서는 공부하지 않다가 2차시험에 와서 비로소 접하게 되는 형법은 법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스러운 과목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탓인지 몰라도 형법문제는 거의 대부분 각론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되어 왔다. 따라서 [문 2]는 수험생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3]도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모욕죄를 출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출제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시험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을 공부함에 있어 총론상의 중요 쟁점도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III. 나오면서

수험생들에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맘을 편히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라면 남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면 길고 짧은 것은 발표가 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인사'를 하였으니까 '대천명'한다는 편한 맘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있으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틈틈이 사례문제 해결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초조함을 이기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최대한의 휴식을 선물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험생 모두들 수고 만땅하셨습니다. 당분간 편히 쉬시길 .....

2019. 9. 25. 이인규